



전문엔젤투자자

정의

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유효기간 2년 이내인 개인
(* 밑에 있는 조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해야 함)

① 투자실적요건

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금액이 총 1억 원 이상 투자 및 6개월 이상 보유 (대상 : 최근 3년간 특수관계인*이 아닌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, 창업자(7년 이내)) (* 47p 참고)



② 경력요건 (하나 이상 충족)

- 상장법인 창업자 또는 상장법인 등기이사로 3년 이상 재직자
- 벤처기업 창업자이거나,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연매출 1천억 이상이었던 적이 있었던 자
- 신기술창업전문회사 ·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서 투자심사 2년 이상 수행한 자
- 기술사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변리사,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, 감정평가사, 박사(이공 혹은 경상)
- 전문엔젤투자자 교육을 이수한 자



우대사항

전문엔젤투자자는 예탁금과 상관없이 코넥스(KONEX) 시장에 참여가 가능하며, 전문엔젤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음
(요건 : 5천만원이상 투자&자본금의 10% 이상)

구분	지원요건	지원 내용
R&D 지원	창업초기기업으로서 전문엔젤투자자	1년간 최대 2억원 지원 (전문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)
엔젤투자매칭펀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엔젤투자금액의 최대 2.5 배수 매칭· 매칭펀드 지분의 70%까지 콜옵션 행사 가능



엔젤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

공통사항

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,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에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 혜택 부여

감면내용



1 종합소득 공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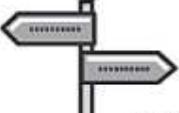
구분	종전 (2014년)	현행 (2016년)
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5천만원 이하 : 50%5천만원 초과 : 3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천5백만원 이하 : 100%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50%5천만원 초과 : 30%
소득공제 한도	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%	
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벤처기업기술성이 우수한 창업초기기업*직전연도 R&D 지출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*	좌동
특별공제 종합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적용제외	

*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

2 양도소득 비과세

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
투자(단, 특수관계자에 대한 투자 제외)로서,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양도하는 경우
양도소득 비과세

*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(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 제1항 및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제13조(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 제1항에 의거



소득공제를 위한 출자 및 투자확인서 발급방법

소득공제 절차



- 1 개인의 경우,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의뢰
- 2 벤처기업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확인서를 일괄 발급하여, 소재지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(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전남지방중기청)에 구비서류를 on-line 또는 공문으로 송부
 - * 투자한 벤처기업의 폐업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을 통한 투자확인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→ 개인이 직접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(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)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
- 3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, 투자자는 소득공제 신청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

신청자



벤처기업이 일괄신청

신청방법



온라인 또는 방문신청